

1. 통상현안정보

■ 일본, 주요국과 조세조약 강화 방침

- 조세 감면으로 투자 촉진효과를 기대

- 일본 정부는 '03년말 30여년 만에 미일 조세조약을 개정할 것을 시작으로 주요국과 조세조약을 개정을 위한 교섭을 본격화하기로 하였음.
- 이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재무성소관)는 아시아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미일 신조약을 참고로 일본과 아시아각국의 모·자회사간의 배당, 특허 사용료 등에의 과세를 상호 경감·면제토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이 같은 주요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은 기업의 세무부담을 경감하여 FTA추진관련 투자·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일차로 이미 중국에 대해 이 같은 의향을 타진하였음.
- 일본은 지난해 말 시점에서 55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조약이 체결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를 해외에 설치한 기업은 모회사·자회사간 배당관련 세무처리가 대내외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라 세무처리관련 부담의 경감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어온 바 있음.
-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에서는 자회사로부터 외국의 모회사로 배당시 자회사측의 국가에서 세율 10%로 과세하던 것을 출자비율 50%를 초과시 이를 면제하고 특허 등의 사용료도 지불을 받는 국가에서 면세 조치하는 방향으로 조약 내용이 개정되었음.
- 일본 정부는 아시아국가와의 조약 개정도 미일 신조약을 기본으로 교섭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태국, 필리핀에 실무레벨의 교섭을 추진하는 외에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에도 이미 지난 4월에 비공식 의사 타진을 한 바 있음.
- 현행 주요국과의 조약내용을 보면 모회사·자회사간의 배당에 5~20%, 사용료(특허)에 10~25%의 세율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세율을 감면한다는 입장임.
- 가령 모회사·자회사간의 배당이 면제되면 아시아에 자회사가 있는 일본기업은 상대국에서의 납세액이 줄어들게 되며 일본의 모회사가 적자일 경우 양국에서의 합계 납세액을 압축할 수 있으며 세무수속 절차도 생략할 수 있음.
- 개정 작업은 세목별로 세세한 절충이 필요하여, 미일신조약도 타결되기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아시아각국과 연내에 예비교섭을 개시할 경우 2009년경에는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다만 일본과 아시아간의 투자 수익을 보면 일본이 수익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조약 개정은 단기적으로 각국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편임.

- 예컨대, 일중간의 이자, 배당의 소득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본이 약 6백억엔의 수익 초과를 기록하였으며 특허 등의 사용료도 일본의 수취 초과액이 약 250억엔에 달하고 있음.
- 재무성은 조약 개정이 민간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을 초래하여 통화위기의 회피, 각국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FTA와 개정 조세조약의 동시 추진을 통해 아시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일본과 아시아주요국과의 조세조약 세율>

구 분	모회사.자회사간배당	특허 사용료
태 국	20%	15%
필리핀	10%	25%
인도네시아	10%	10%
중 국	10%	10%
한 국	5%	10%
미 국	원칙 5% 출자비율 50%초과시 면제(구조약)	면세(10%)

* 주 : 미일조약은 금년 7월부터 적용

(문의처 : 도쿄무역관 신태철 stc69@kotra.or.kr)